

강의평가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취지

: 직제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2. 개정주요내용

: 직제 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교무연구처장 → 교학처장

3. 시행일: 승인일

4. 향후일정

- ①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사전보고 이후 7일
- ②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2022년 1월 중
- ③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2년 2월 중
- ④ 개정 안 확정 보고 및 공포

붙임 : 1. 강의평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강의평가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강의평가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규 정 명 강의평가규정 개정(안)		
개정전	개정후	비고
<p>제7조(평가결과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사행정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다.</p> <p>② 학과장 또는 부서장은 당해 학과 또는 부서에 소속하거나 소관 과목을 강의한 비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p> <p>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연구처장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7조(평가결과 공개)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직제개편 반영
	<p>부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	

강의평가규정

<극동규정 제146호> <시행일 2020.00.00.>

제	정: 2014.06.23.
개	정: 2015.05.01.
개	정: 2016.04.01.
개	정: 2016.08.29.
개	정: 2017.01.16.
개	정: 2017.04.24.
개	정: 2017.08.01.
개	정: 2019.09.01.
개	정: 2020.07.01.
개	정: 2022.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26조에 근거한 교원의 강의평가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강의만족도조사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수법과 수업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에 개설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의2(구분 및 적용범위) ① 강의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한다.

② 피드백을 통한 강의개선을 위해 매학기 중반 소정의 기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교원에게 제시하여 잔여 강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기말평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4.1.>

제3조(평가주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성적확인기간에 본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설문지 등을 통한 방법으로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확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 공지하며, 평가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④ 학사행정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따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 문항 중 의견, 제안사항 등 개방형 문항은 평가점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유형 및 항목) ① 강의평가는 선다형 18개 문항과 개방형 2개 문항으로 구성하되, 선다형 문항은 5점 척도로서 공통형 15개 문항과 강의유형별 상이형 3개 문항으로 하며, 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07.01>

② 공통형 평가항목은 수업준비와 진행, 수업내용과 방법, 과제 및 평가, 수업만족 등을 평가한다.

③ 강의유형은 일반강의형, 실습실기형, 사이버강의형으로 분류한다.

제5조(평가점수 산정) ① 강의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문항의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학생들이 당해 문항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의 백점기준 환산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 과목의 강의평가 점수는 문항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교원의 강의평가 점수는 전체 과목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② 교원의 강의평가 점수는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다른 규정 또는 총장 승인으로 일정 기준을 정하여 특정 항목의 점수를 가중하거나 특정과목의 평가점수를 배제하고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강의평가 점수 산정에 있어 해당 강좌의 이수구분, 강의유형 및 평가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환하여 산정하고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문항별 만점은 100점으로 한다. <신설 2017.4.24.>

1. 이수구분에 따른 변환

가. 교직, 일반, 전공교과: 해당 없음

나. 교양교과: 1.032 × 강의평가 원점수

2. 강의유형에 따른 변환

- 가. 일반 및 실습·실기형: 해당 없음
- 나. 사이버강의형: 1.032 × 강의평가 원점수

3. 평가인원에 따른 변환(온라인 제외)

- 가. 극소형(1~4명): 0.954 × 강의평가 원점수
- 나. 소형(5~20명): 0.997 × 강의평가 원점수
- 다. 표준형(21~50명): 1.010 × 강의평가 원점수
- 라. 중형(51~100명): 1.032 × 강의평가 원점수
- 마. 대형(101명 이상): 1.050 × 강의평가 원점수

제6조(평가결과 확인) ①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담당교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학사행정시스템 등을 통하여 문항별 및 과목별 점수를 해당교원에게 제시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사행정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다.

② 학과장 또는 부서장은 당해 학과 또는 부서에 소속하거나 소관 과목을 강의한 비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2.00.00.>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교수 재임용 및 승진, 강사 위촉 등에 반영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8.29., 2017.1.16., 2020.07.01>

1. 우수교육상 및 명품강의 인증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
최우수 교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강의평가(80%), 최우수강의 추천(20%), 심사위원평가(10%)점수가 가장 우수한 교원 - 인원: 1명 - 시상일: 교원연수일 - 포상 결과 홈페이지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강의평가(80%), 최우수강의 추천(20%), 심사위원평가(10%)점수가 가장 우수한 교원 - 인원: 1명 - 시상일: 학기 종료 후 본교 지정일 - 포상 결과 홈페이지 공지
우수 교육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강의평가 점수가 우수한 교원 - 인원: 우수 2명 - 시상일: 교원연수일 - 포상 결과 홈페이지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강의평가 점수가 우수한 교원 - 인원: 우수 2명 - 시상일: 학기 종료 후 본교 지정일 - 포상 결과 홈페이지 공지
명품 강의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2회 연속 강의평가 우수 과목 선정 - 포상: 표창, 홈페이지 공지 - 시상일: 교원연수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2회 연속 강의평가 우수 과목 선정 - 포상: 표창 및 명품 강의 인증(강의경력 증명서 표기), 홈페이지 공지 - 시상일: 본교 지정일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학년도 18학점(학부기준) 이상 담당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평가인원 15명 이상인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점수로 선정 - 우수 교육상 수상 교원은 5년동안 우수 교육상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학기 3학점(학부기준) 이상 담당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평가인원 15명 이상인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점수로 선정 - 우수 교육상 수상 교원은 3학기동안 우수 교육상 대상에서 제외

2. 매 학기 강의평가 결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각 상위 10%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에게 이를 공지한다. <개정 2017.1.16.>

③ 강의평가 70점 미만인 강의개선 대상 교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및 규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1.16., 2017.8.1., 2020.07.01>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
강의개선 대상	- 교수법 관련 교육 이수(의무)	- 교수법 관련 교육 이수(의무)
2회 연속 강의개선 대상	- 교수법 관련 교육 이수(의무) 및 강의개선계획서 제출 ※ 재임용 조건의 교수법 특강과는 별도의 교육 이수	- 재임용 배제
3회 이상 연속 강의개선 대상	- 수업컨설팅 이수(의무) ※ 재임용 조건의 수업컨설팅과는 별 도의 컨설팅 이수	
의무 불이행시 조치사항	- 불이행 1회당 1회 승진심사 대상 제외 - 불이행 1회당 차년도 승급(연봉제 교원은 연봉 인상) 1년간 제한	- 재임용 배제

④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6.4.1.>

제9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① 교학처장은 강의평가 결과를 매학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9.09.01.>

②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본교 학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이외의 개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④ 강의평가업무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전의 강의평가 결과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의 “교무처장”을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 활용 적용례) 이 규정 제8조는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 활용 적용례) 이 규정 제8조 제3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 강의평가부터 적용하되, 그 기산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 동 조항에 해당하는 교원을 개정 조항의 강의개선 대상 교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4.1.,2020.07.01>

강의평가 항목

* 공통문항 17개는 모든 강의유형에 적용하고, 유형별 3개 문항과 조합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유형	평가영역	순	문항	비고
공통	강의준비 · 진행	1	강의계획서가 강좌선택 및 수강에 도움이 되었다	
		2	강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3	강의준비와 강의내용이 충실하였다	
	강의내용 · 방법	4	강의시간에 다른 내용과 분량이 적절하였다	
		5	강의내용은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6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7	강의를 통해 기대했던 부분을 학습할 수 있었다	
	과제 · 평가	8	시험과 과제, 발표등은 수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9	강의중에 이루어진 평가는 공정하게 시행되었다	
	강의만족	10	이 강의를 통해 내 역량이 향상되었다	
		11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강의만족도
		12	나는 이 강의를 우리 학교의 최우수강의로 추천한다.	가중평가
	학습자 자기성찰	*16	나는 강의를 경청하였다	자기성찰 (비평가항목)
		*17	나는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였다	
		*18	나는 활발한 질문과 토론등으로 수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소감문	*19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개방형 (비평가항목)
		*20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강의 유형별	일반 강의형	13	강의자는 휴강할 경우 보강하였다.	
		14	강의자는 학생들이 강의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15	강의자는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실습· 실기형	13	강의자는 실습(실기)를 결강할 경우 보강하였다.	
		14	강의자는 학생들이 실습(실기)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15	강의자는 실습(실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사이버 강의형	13	강의콘텐츠는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14	교수는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15	강의콘텐츠는 흥미를 유발하였고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하였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20점) 2. 그렇지 않은 편이다(40점) 3. 보통이다(60점) 4. 그런 편이다(80점) 5. 정말 그렇다(100점)

* 5점 척도의 백점기준 환산점(척도별 점수×20)의 산술평균을 강의평가 점수로 활용.